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92 발의연월일: 2020. 11. 17.

발 의 자:서정숙·강기윤·구자근

송언석 • 백종헌 • 이철규

한무경 • 이종성 • 권성동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2천 명에 이르고 있음.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,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,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반면,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, 쇼핑몰,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 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"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"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 자 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장애인용 이용 편의 물품 제공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시설주는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- 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시설물
- 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운영하는 유통매장
-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애인 쇼핑 카트의 수량 등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3(장애인용 이용 편의
	물품 제공)
	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
	물의 시설주는 장애인이 해당
	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
	있도록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
	<u>갖추어 두어야 한다.</u>
	1.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
	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
	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
	점포에 해당하는 시설물
	2.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2
	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
	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
	<u>운영하는 유통매장</u>
	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
	는 장애인 쇼핑 카트의 수량
	등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
	<u>로 정한다.</u>